

제4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6. 10.16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
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
 지역보건의료계획(2006~2010년)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

- 지역주민의 요구도 및 사회관심도, 각종 기초 통계자료 수집분석 실시
- 지역사회 진단 결과
 - ▷인구 지속 감소 추세 및 저출산 고령화 양상
 ⇒모성, 영.유아, 노인보건사업 비중 증대
 - ▷의료취약계층 대상 ⇒만성질환관리, 전염병관리, 재활보건사업 확대
 - ▷민간의료기관과 역할분담⇒보건소는 건강증진 등 예방중심으로 전환
- 중점과제 선정결과
 - ▷2004년 부산시민설문조사결과 및 지역현황분석결과 등 반영
 - ▷ 고협압관리사업, 운동실천사업, 암검진사업 선정

나. 중점과제 수립 (3가지 사업)

다. 건강증진사업 계획(금연, 절주, 운동, 영양)

라. 구강보건사업 계획

마. 개별사업계획(13가지 사업)

- 영.유아 보건사업
- 모성보건사업
- 대도시방문보건사업
- 재활사업
- 노인보건사업
- 정신보건사업
-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
- 의.약물관리사업
- 응급의료에 관한사업
- 진료,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
- 보건 및 검사에 관한 사업
- 공중보건의사 지도 사업
- 기타 취약계층 지원사업(저소득여성 건강검진,희귀난치의료비지원,암관리)

바.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

- 조직 및 인력
- 시설, 장비, 예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3조, 동법시행령 제5조

나. 주민공고 : 2006. 9. 27~ 10. 11(15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다. 기 타 : 2006. 10. 13 ▷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